POSRI Issue Brief

2026.4.8

대미투자 압력에 대비한 안전판 `대미투자특별法`, 의미와 시사점

전민수 수석연구원, 경제정책연구센터 (minsu.jun@posri.re.kr)

Summary

○ 대미투자특별법(3.17일 공포)은 韓美정상회담에서 합의된 對美투자 이행의 법적 기반일 뿐만 아니라, 일방적 구조의 對美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국내 법체계 안에서 관리·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특별법에서 마련된 對美투자의 위험 관리 장치들이 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업성 판단 ▶외환시장 안전장치 ▶재협의 요청 ▶정부의 정보 접근 관련 구체적인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중점 과제

○ 우리 기업들은 최근 변동성이 급증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공급망 재편 노력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 준비를 병행할 필요

posco
포스코경영연구원

1. 대미투자특별法[1]의 의미

○ **3.17일, 2차례 韓美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韓美전략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적·제도적 기반 '대미투자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공포**

- 대미투자특별법은 韓美정상회담에서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합의된 한미전략투자 MOU[2](이하 MOU) 내용을 한국 정부가 이행하기 위해 투자의 심사·의결·집행·통제 절차를 법제화

[대미투자특별法 주요 내용][3]

조문	주요 내용
제2조 (정의)	▪ '전략적투자'의 개념·분류 및 상업적 합리성 등 투자 기본원칙 정의. 法 적용대상 및 심사기준을 명시
제3조3항 (국회 사전동의)	▪ 국가안보·공급망 등 예외 사유로 상업적 합리성 미확보 투자를 추진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의 사전동의 필요
제5조 ~ 제15조 (추진체계)	▪ 사업관리委가 상업적 합리성 등 1 차 검토 → 운영委가 투자 추진의사를 최종 의결하는 중층 구조
제16조 ~ 제39조 (투자공사)	▪ **한미전략투자공사(전략적 투자 전담 집행기구) 설립** - 자본금 2조원(정부 출자)
제40조 ~제44조 (투자기금)	▪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 재원: 출연금,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자금 등 - 목적: 기금을 통한 대출·보증 및 공동투자 지원 -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 계정은 별도 관리
제51조 (국회 사전보고)	▪ 운영위원회 추진의사 의결 후 美측 협의 개시 전, 국회 소관 상임위 사전보고 필수

- 對美투자 이행 관련 양국간 합의된 일정은 없었으나,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적절한 시점의 특별법 처리가 양국 간 합의의 신뢰를 담보하는 정치적 장치로 필요했던 상황

  • 미국은 관세인하 적용 기준으로 '특별법안의 의회 발의'를 지목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특별법 처리의 지연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25.11.14일)
[3] 법률신문(26.3.16일)

제기[4]하는 등 韓美양국 간 협력 이행의 바로미터로 인지

대미투자특별法 처리 과정

- 25. 7.30일(1차 정상회담) 對美투자 규모/형식 큰 틀에서 합의
- 11.14일(2차 정상회담) 韓美전략적투자 MOU 체결
- 11.26일 국회 최초 법안발의 및 美 관세 인하 소급 적용
- 26. 3.12일 국회 본회의 가결(특별위원회 대안 채택)
- 3.17일 국무회의 통과 (6.17일부터 시행)

○ **이번 특별법은 단순히 MOU 이행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대규모로 진행될 對美투자의 관리·통제 장치의 제도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양국간 합의된 對美투자 구조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하게 설계된 만큼, MOU에 명시된 이행 프로세스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동시에 국회 및 정부에 의한 투명하고 안정적인 관리·통제 장치들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반영한 것이 특별법의 주요 특징

- **'상업적 합리성' 기본 원칙 법제화:** 한국 정부 요구로 MOU에 반영한 투자 사업의 기본 조건으로서 '상업적 합리성'[5] 을 對美투자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였고, 이는 향후 미국이 상업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時, 우선적인 방어 도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

  - 안보,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이유로 상업성 부족 사업 추진 時,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예외성 부여 (제3조 3항)

- **2단계 의사결정 구조:**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 이하 사업관리委)가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 및 법적 사항을 검토하고, 한미투자운영위원회(위원장: 재경부 장관, 이하 운영委)가 최종 투자 추진 의사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능 측면에서 부처 간 견제·균형을 확보하였고 절차 측면에서 정책 판단의 단계를 두어 안전 장치를 마련

---

[4] 트럼프 대통령, 1.16일 본인의 SNS(트루스 소셜)에서 "한국 입법부가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등 상호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언급

[5] 특별법(제2조)에서 정의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 **국회 감시·통제 권한 보장:** 개별 투자사업 전반에 국회 통제 및 감시 권한을 포함, 미국 주도 구조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리스크를 떠안는 위험에 대비하여 국회가 제동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

  - 비상업적 사업에 대하여 국회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추진 의결 사업에 대한 사전보고 ▶기금운용, 영향평가, 사업 성과 등에 대한 정기보고 ▶손실·운용구조 변경 시 즉시 보고를 법적으로 의무화

[對美투자절차 측면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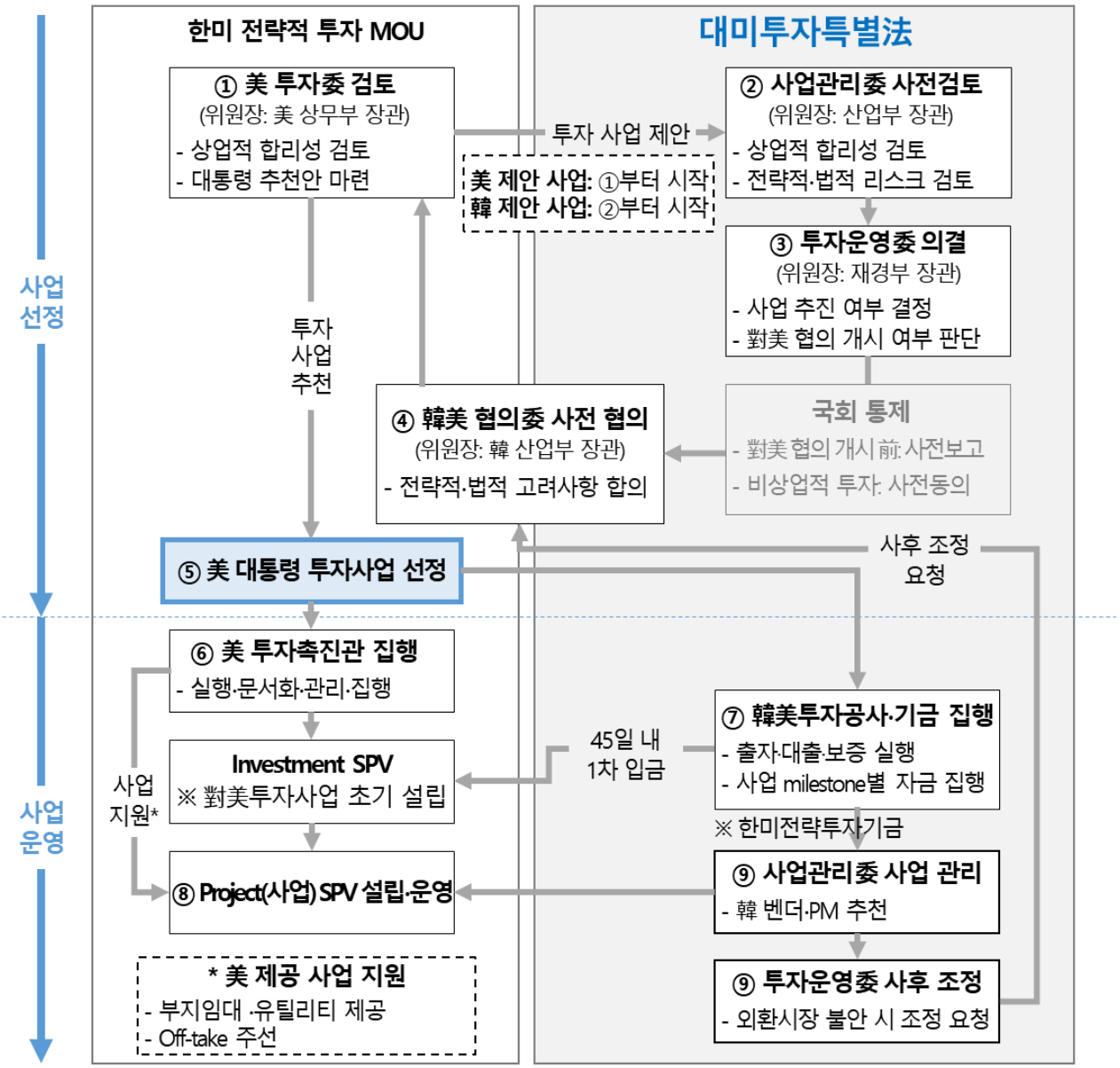

2. 향후 중점 과제

○ **특별법에서 마련된 對美투자의 관리·통제를 위한 법적 장치들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령, 지침, 공사 내규 등에서 빈틈없는 규정 마련이 중요**

- 특별법은 위험 관리의 기본방향과 제도적 틀 규정이 목적인 만큼, 실질적인 위험 통제 수준은 하위 규범에서 세부 절차와 방식을 얼마나 정교하고 엄정하게 설정하느냐에 의해 좌우될 전망

- **상업성 판단기준 구체화:** 특별法은 상업성 판단 기준을 시행령에 포함하도록 규정(제2조)하고 있는 바, 시행령에서 기대수익률, 회수 기간, 손실 허용 범위,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 등 상업성 판단을 위한 세부 기준 설정 필요

  - MOU 상에서도 특별법과 유사하게 상업적 합리성을 '원리금 충당이 가능한 현금흐름 창출' [6]정도로 명시, 현금 흐름 판단 관련 세부 조건을 시행령 등에서 보다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정부의 투자 타당성에 대한 판단 주도권 선점을 기대할 수 있음

- **외환시장 안전장치 강화:** 현행 법안에는 미국과 합의된 연간 투자 상한(U$200억)과 투자공사 내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 근거(제30조)만 명시되어 있어 시행령, 공사 내규, 기금운영 규정·지침 등에서 현재 대미투자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다 강화된 외환시장 안전장치 보완을 추진

- **재협의 요청 기준 마련:** 특별법은 진행 중인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재협의가 가능함을 명시[7]하고 있으나, 재협의 개시 사유와 정부의 요청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만큼, 하위 규정에서 재협의 판단 기준과 절차, 정부의 대응 원칙을 보다 명확히 규율할 필요

  - Off-take 불확실성, 인허가 지연, 전쟁과 같은 천재지변 발생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유로 수익성이 악화된 경우 등은 재협의 사유로 포함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의 재협의 요구를 법적

---

[6] MOU 부록 A

[7] ①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5조3항) ② 중대한 변경(美 통상정책 변화 등)이 발생하거나 상업적 합리성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13조1항) 투자 금액의 조달 관련 재협의가 가능하다고 명시

의무로 부과하는 법률 개정까지 함께 검토

- **SPV 운영 관련 정보접근 요청 법적 의무화:** 100% 한국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투자(Investment) SPV(Special Purpose Vehicle, 특수목적회사)'[8], '사업(Project) SPV'[9]의 재무정보, 집행현황, 내부 의사결정 등 경영정보 공개 범위는 미국 관련 법률 기준으로 결정될 것이나, 우리 정부의 정보 열람·감사권에 대한 요청 의무 규정은 마련할 필요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 **우리 기업들은 최근 변동성이 급증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공급망 재편 노력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 준비를 병행할 필요**

- 2.20일 美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으나, 미국 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공통 관세 부과[10] 및 301조 조사 착수[11] 등 대체 압박수단을 강구하고 있어, 한국이 양국 간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외면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 특히, 중동전쟁에 따른 비판 여론 확산과 중간선거 캠페인 본격화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수록, 對美투자를 약속한 국가들에 대한 가시적 이행 압력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

- 특별법에 명시된 對美투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준비 기간이 최소 수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최초 투자사업 선정 절차에 대해서 합의된 시한이 없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한국이 절차상 확보 가능한 시간과 제도적 여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

  - 특별法 시행 시점을 3개월 후[12]로 특정하였고, 공사 설립, 기금 설치, 투자 SPV 설립 등 최초 투자사업 선정 이전에 필요한 준비 절차만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

[8] 한국의 자금을 받아 개별 투자사업에 배분 및 배당금을 회수하는 상위 운용기구

[9] 개별 투자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주체

[10] 美 대통령 포고문 11012(26.2.20일)

[11] 美 무역대표부 보도자료(26.3.11일)

[12] 통상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제·개정된 법률은 공표 20일후 효력 발생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

- 다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동시에 자원 부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혁신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인 만큼, 공급망 재편과 제조업 유치 정책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한국 기업에도 실질적인 기회요인이 될 수 있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

  - MOU 상의 對美투자 구조를 활용할 경우, 기업은 대정부 협상을 전면에서 진행하지 않더라도 美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와 韓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을 확보할 수 있어, 미국 진출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기업들은 치밀한 현지화 전략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준비하여, 제도 및 절차가 완전히 안착되지 않은 초기 국면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선제적 협상 및 지원 확보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

-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 이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불확실성[13]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보 제공 ▶현장 민원 접수 ▶대사관 및 관계부처 협의 연계 기능을 갖춘 '통합 지원 창구' 운영을 검토할 필요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13] 美 제도 해석, 인허가 진행, 통상 협상에 따른 수출입 절차 및 관세 변화 등

[참고 문헌]

- 대한민국 정책프리핑(25.11.14.),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비공식 번역본)
- 대한민국 정책프리핑(25.11.14.),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TH RESPECT TO STRATEGIC INVESTMENTS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 백악관(26.2.20.), Imposing a Temporary Import Surcharge To Address 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s(포고문 11012)
- 미국무역대표부(26.3.11.), USTR Initiates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Sectors(보도자료)
- 법제처 국민참여센터(26.3.1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 산업통상부(26.3.1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보도자료)
- 법률신문(26.3.16.),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